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궁도 진흥법안 검 토 보 고

■ 박찬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624호)

2024.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정환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3
2. 궁도 진흥을 위한 시책 및 기본계획 마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 ..	7
3. 궁도의 날 지정	9
4. 궁도단체 및 궁도시설의 지원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3. 28.
3. 회 부 일: 2024. 3. 29.

II. 제안이유

궁도(弓道, 우리말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의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한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등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무예로, 활과 화살의 제작 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무예와 전통 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된 바 있음.

아울러, 우리 민족 고유의 무형유산인 궁도를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더 나아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나아가 궁도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1.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궁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함(안 제3조).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궁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궁도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4. 궁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궁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함(안 제7조).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궁도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IV. 검토의견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제정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弓道)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진작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인 궁도(弓道)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궁도(우리말 ‘활쏘기’)는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표적을 맞히는 전통 놀이이자 전통무예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문화임. 특히 우리나라의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에서 보듯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 맥이 끊이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활쏘기는 단순히 과녁을 맞추고 점수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활을 만들고 다루는 것에서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행위로 여겨져, 육체적 단련과 정신적 수련을 병행하는 행위로서의 가치가 있음.

또한,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의 ‘수렵도’, 김홍도의 ‘풍속도’ 화첩 중 활쏘기, 각종 관찬 자료 및 조선 선비들의 문집에도 등장하여 무예사 및 당대의 풍속 파악에도 기여하는 등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으며, 이러한 다양한 가치가 인정되어 2020년 7월 30일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된 바 있음.

제정안은 국가무형문화재인 궁도를 지원하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그 가치를 계승·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2008.3.28. 제정된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이 이미 일반법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동 법은 전통무예 및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한 정의(제2조),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제3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제4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제5조),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제5조의2) 등 전통무예 일반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개별 전통무예

지원법이 가져올 파급효과 등 별도 제정안의 필요성과 실익을 심도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임.

[표] 「궁도 진흥법안」과 「전통무예진흥법」 비교

「궁도 진흥법안」		「전통무예진흥법」	
정의(제2조)	궁도지도자	정의(제2조)	전통무예
	궁도시설		전통무예지도자
	궁도단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제3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제3조)	
협조(제6조)			
궁도의 날(제7조)			
궁도단체 및 궁도시설의 지원(제8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제5조)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제5조의2)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제6조)	

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궁도의 가치 및 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별도의 제정안이 아닌 「전통무예진흥법」의 체계 내에서 궁도 진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도 제정법안의 일부 개별 조문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음.¹⁾

입법례를 보면, 씨름이나 태권도와 같이 개별법률(「씨름 진흥법」,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되는 전통무예의 사례가 있는바, 해당 개별 법률은 제정안과 유사하게 진흥 기본계획,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기념일(씨름의 날, 태권도의 날) 등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현행 「전통무예진흥법」을 통한 궁도 진흥의 가능성과 실익, 그리고 유사 입법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 법률로 제정할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 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조(궁도단체 및 궁도시설의 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전통무예진흥법」을 고려하여 개별 법률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고, 안 제7조(궁도의 날)과 대해 행정안전부는 궁도의 날 지정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존 기념일과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

2. 궁도 진흥을 위한 시책 및 기본계획 마련,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제정안의 요지

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궁도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제정안 제4조 및 제5조]

제정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궁도 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궁도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궁도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궁도 진흥의 기본방향
2. 궁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 궁도 교육 등 궁도의 전승을 위한 교육·보급에 관한 사항
4. 궁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궁도시설 및 궁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궁도 국제교류·협력·보급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궁도 진흥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8. 궁도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에서는 궁도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궁도 진흥의 기본방향, 궁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학교 궁도 교육 등 궁도의 전승을 위한 교육·보급에 관한 사항, 궁도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궁도시설 및 궁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궁도 국제교류·협력·보급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궁도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궁도 진흥을 위해 궁도에 대한 일반 시민의 접근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의 대상 및 장소를 “학교”로 한정하기 보다는 “궁도의 보급 및 전승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등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기획재정부의 경우, 전통무예에 관한 일반법인 「전통무예진흥법」을 고려할 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

3. 궁도의 날 지정

가. 제정안의 요지

제정안은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지정하여 궁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정안 제7조]

제정안
제7조(궁도의 날) ① 국가는 궁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궁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정한다.
② 그 밖에 궁도의 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7월 30일을 궁도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

유사한 예로, 씨름은 씨름판이 벌어지던 단오를 기념하여 음력 5월 5일을 ‘씨름의 날’로 지정하였고, 태권도는 IOC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하였음.

[표] 궁도 · 씨름 · 태권도 기념일

	궁도의 날(안)	씨름의 날	태권도의 날
날짜	7월 30일	5월 5일(음력)	9월 4일
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단오	IOC 정식종목 채택
법적 근거	궁도진흥법(안) 제7조	씨름 진흥법 제7조	태권도법 제7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궁도의 날’을 법적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정책적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 기존 기념일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4. 궁도단체 및 궁도시설의 지원

가. 제정안의 요지

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정안 제8조]

제 정 안
제8조(궁도단체 및 궁도시설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궁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궁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궁도시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궁도단체와 궁도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궁도경기장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궁도단체의 경우 「전통무예진흥법」이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²⁾ 대한궁도협회의 경우

2)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의 정회원단체임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고 있음.³⁾

또한, **공도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에 해당하여 「체육시설법」 제4조제1항4)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적절하게 지원할 대상인바, 제정안은 이를 다시 규정하여 명확히 확인하고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전통무예진흥법」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과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

3)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한 지원이 아닌 대한체육회 정회원 단체 지위에 따른 지원임.

4) 「체육시설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